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410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4월 24일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·보완 함.

2. 주요 골자

- “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”을 “사회적 약자”로 수정함(안 제5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약자 및 소외계층”을 “약자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공공성 확보계획 수립) ①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사업시 행자로부터 세빛섬 사업의 공 공성 추가 확보를 위한 “<u>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</u>”(이하 “공공성 확보계획”라 한다)을 제출받아야 하며, 공공성 확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세빛섬 사업 관련 공익에 영 향을 미치는 사항</p> <p>2. 세빛섬 운영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 항</p> <p><신 설>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	<p>제5조(공공성 확보계획 수립) ① - ----- ----- ----- <u>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 주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세빛섬 운영 시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필요하 다</u>고 인정되는 사항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5조(공공성 확보계획 수립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약자</u> - ----- -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~ 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의 제목 “총 칙”을 “총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사업시행자”를 “사업시행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(주)플로섬”을 “(주)세빛섬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시장”를 “시장”으로, “조속한”을 “빠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합의서”를 “합의서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”을 “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미치”를 “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약자 및 소외계층”을 “약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3. 세빛섬 운영 시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서울시로부터”를 “시로부터”로, “서울시의”를 “시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

으로, “이내”를 “내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서울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설치)”를 “(위원회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)”을 “(위원회 구성)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6항 중 “서울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위원 해촉)”을 “(위원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손상하는”을 “떨어뜨리는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<u>총 칙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“세빛섬 사업”이란 세빛섬 사업의 사업시행자(이하 ‘<u>사업시행자</u>’라 한다)가 투자하여 조성한 세빛섬 및 미디어아트갤러리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영업활동을 말한다.</p> <p>4.·5. (생 략)</p> <p>6. “사업시행자”란 세빛섬을 조성한 <u>(주)플로섬</u>을 말한다.</p> <p>7. (생 략)</p> <p>제4조(운영 정상화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‘<u>시장</u>’이라 한다)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<u>조속한</u> 시일 내 모든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세빛섬 운영 정상화를 위한 2013년 9월 12일자 합의서(이하 ‘<u>합의서</u>’라 한다)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자의 협약서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공공성 확보계획 수립) ①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장 <u>총 칙</u>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“<u>사업시행자</u>”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(주)세빛섬</u>-----.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운영 정상화) ① ----- ----- “<u>시장</u>”----- ----- <u>빠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“<u>합의서</u>”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공공성 확보계획 수립) ① ----- -----</p>

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 확보를 위한 “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”(이하 “공공성 확보계획”라 한다)을 제출받아야 하며, 공공성 확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세빛섬 사업 관련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

2. 세빛섬 운영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② 제1항의 공공성 확보계획은 세빛섬 정상운영 개시일로부터 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라 한다)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간까지 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·② (생략)

③ 사업시행자는 제5조제4항 및 이조 제2항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과 연도별 세부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되,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시행완료내역 정산) 사업시행자

-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-----

-----.

1. -----
주-----

2. ----- 약자 -----

3. 세빛섬 운영 시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-----

----- “시”-----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따라 -----

-----.

제7조(시행완료내역 정산) -----

는 제6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승인 받은 연도별 세부실행 계획을 시행하고, 매년 그에 관한 완료내역을 다음 연도 세부시행계획 심의 시에 시장에 제출하고 서울시의 정산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지체상금)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않거나, 중단할 경우 시장은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시장은 제7조에 의한 시행완료내역 정산 후 7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체상금 잔액을 승인하는 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제9조(시의회 보고)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공공성 확보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설치) 시장은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세빛섬 사업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12조(공공성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)

----- 시로부터 -----

----- 시의 -----
-----.

제8조(지체상금) ① -----
따라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따른 -----
----- 내 -----

-----.

제9조(시의회 보고) -----
----- 서울특별시의회 -----

-----.

제11조(위원회 설치) -----

----- 심의위원회(이하
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⑥ (현행과

① ~ ⑥ (생략)

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~ ⑤ (생략)

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된 서울시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관계자와 전문가에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⑦·⑧ (생략)

제15조(위원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3.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17조(위원회 존속기한) 위원회 존속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시행완료시까지를 운영기한으로 한다.

같음)

제13조(위원회 운영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 시 -----

-----.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위원 위촉 해제) -----

----- 위촉 해제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----- 떨어뜨리는 -----

제17조(위원회 존속기한) -----
----- 없으면 -----

-----.